

대한제국기의 官에 의한 의학교육

여인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대한제국기(1897-1910)는 우리 근대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띠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개항과 더불어 외세와 대면하게 된 조선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이권을 빼앗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주적인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이를 위해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한 노력들은 한반도에 진출한 여러 세력들이 각축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이들의 역학관계를 이용하면서, 때로는 어느 한쪽에 의존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세력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결말을 맺게 된다.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기에 이루어졌던 여러 방면의 자주적인 근대화 노력 가운데 근대의학의 수용, 특히 그 가운데서도 근대적 의료인력을 양성하려는 대한제국의 노력이 시작되고 진행된 과정, 그리고 결국은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로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어 식민지적 의료인력양성으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에 의한 서양의학교육의 시작

대한제국기에 관에 의해 이루어진 서양의학교육의 효시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종두의양성소가 국가에 의한 서양의학교육의 효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¹⁾ 종두의양성소의 운영주체가 사립이었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 의한 의학교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²⁾

국가적인 규모의 종두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낀 조선정부는 1895년 ‘종두규칙’³⁾을 반포하고, 종두사업을 실제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종두의양성소 규정’⁴⁾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종두의 양성소는 내부에서 관할하는 1개월 과정의 기관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때는 규정만 반포하였을뿐 실제로 정부에서 종두의양성소를 세우지는 않았다. 종두의양성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1897년에 들어와서이다. 1897년 7월 10일자 관보에는 「内部衛生局允許種痘醫養成所醫生卒業試驗榜」이라는 제목 하에 졸업시험에 통과한 종두의 10명의 명단을 실고 있다.⁵⁾

1)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125쪽, 아카데미아, 1995.

2)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계의 형성』, 168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3) 『관보』, 「내부령 제8호, 종두규칙」, 개국 504년(1895년) 10월 10일.

4) 『관보』, 「칙령 제180호 종두의양성소 규정」, 개국 504년(1895년) 11월 9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內部衛生局允許’라는 표현인데, 1895년 종두의양성소 규정 반포 당시에 종두의양성소를 내부 직할로 규정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允許’라는 표현에 보이는 것처럼 종두의양성소는 나라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내부 위생국에서 인정하는 ‘官認’ 기관 정도의 성격을 띤 것으로 생각된다. 즉 종두의양성소 졸업자에 대해 나라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종두사업에 활용했던 것이다. 만약 1895년 당시의 규정과 같이 종두의양성소가 내부 직속의 기관이었다면, 설립과 함께 소장이나 교수의 임명기사가 『관보』에 실렸을 것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어떠한 정부공식자료에도 이러한 기사가 실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두의양성소는 원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사립 기관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종두의양성소를 운영한 사람은 일본인 후루시로(古城梅溪)였다. 그는 188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공사관 의관으로 근무하다가 1891년 공사관을 사직하고 찬화의원(贊化醫院)을 여는 한편, 여기에서 1897년부터 사립으로 종두의양성소를 운영하였다.⁶⁾ 종두의양성소가 사립이었다는 사실은 “진고개 찬화병원장 古城梅溪씨의 私立한 종두양성소”⁷⁾라고 표현된 당시 신문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종두의양성소는 비록 사립이기는 했으나 조선정부와 긴밀한 관계 하에서 운영되었다. 학부에서 양성소 지원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주었고,⁸⁾ 이 양성소의 교재 『種痘新書』를 학부 편집국에서 출판해 주기도 했다.⁹⁾ 이처럼 후루시로가 사립으로 시행한 종두의 양성 교육은 후루시로가 의학교의 교관으로 들어가면서 의학교 교육에 통합된다. 후루시로가 조선정부와 긴밀한 관계 하에서 종두의 양성소를 운영하고, 나중에는 의학교의 교관으로 고빙된 것은 그가 수행한 종두의 양성 활동이 조선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측면도 있겠지만¹⁰⁾, 또한편으로는 그가 일본 공사관의 의관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조선 정부의 관리들과 쌓은 교분,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후광과 직접·간접적인 도움 등이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후루시로가 만든 종두의양성소가 조선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운영된 것은 사실이나, 나라에서 세운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국가에 의한 서양의학교육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의학교

1) 의학교의 설립과정

조선정부에서 의학교를 설립한 것은 1899년이지만 의학교 설치의 필요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의학교 설치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885년 1월 조영권(趙英權)의 상소에서 확인되며¹¹⁾, 이러한 논의는 10년 뒤인 1895년 1월 고종이 자주독립과 내정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포한 홍범(洪範) 14조의 내용에 교육과 인재등용의 중요성에 관한 강조로 나타나고, 같은 해 2월 2일에 반포된 ‘教育立國詔書’에 의해 구체화되었다.¹²⁾ 이를 계기로 교육에 일대 개혁이 일어나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소학교 등의 관계가 반포되었다. 그 결과 의학교 설립예산

5) 『관보』, 1897년 4월 10일.

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272쪽, 思文閣出版, 1991.

7) 『데국신문』, 1899년 4월 6일.

8) 『데국신문』, 1898년 12월 8일.

9) 『데국신문』, 1898년 9월 30일.

10) 신동원, 앞의 책, 168쪽.

11) 『高宗實錄』, 中, 卷22, 乙酉 正月 十六日條.

12) 배규숙, 「대한제국기 관립의학교에 관한 연구」, 10-11쪽,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6,906원과 부속병원의 설립예산 14,353원이 1896년 내부 소관 예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¹³⁾ 그러나 이 때의 설립계획은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는 정국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실행되지 못했다.¹⁴⁾

그러다가 1898년 7월 만민공동회에서 의학교의 설립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이어서 같은 해 1898년 11월 7일 지식영이 의학교의 설립을 요구하는 긴 청원서를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제출하였다.¹⁵⁾ 지식영은 이 청원서에서 서양의학을 가르치는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나름대로 제안하며 자신이 그 학교의 책임을 맡겠다고 말하였다.¹⁶⁾ 그러자 이 청원을 학부대신이 받아들여 의학교 설립예산을 다음해인 1899년에 책정하고 이의 지출을 결의하였다.¹⁷⁾ 여기에 따라 1899년 3월 24일 의학교 관제가 칙령 7호로 반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칙령 제7호

의학교 관제

제1조 의학교는 국민에게 内外各종 의술을 전문으로 교수하는 곳으로 정한다.

제2조 의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정한다.

제3조 의학교는 學部의 직할이며 경비는 국고로 지원한다.

제4조 의학교의 학과와 수준 기타 규칙은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5조 의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학교장	1인	奏任
교관	3인 이하	奏任 혹은 判任
서기	1인	判任

제6조 학교장은 의학에 숙련된 자를 임명하여 일체 사무를 맡아 관리하게 하고 소속관원과 학생을 감독한다.

제7조 교관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학생을 감독한다.

제8조 서기는 상관의 명을 받아 서무회계에 종사한다.

제9조 경우에 따라 학교장을 학부주임관이 겸임도 하고 학교장이 교관을 겸임할 수도 있다.

제10조 교관은 혹 외국인을 고용하여 충원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수는 학부대신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11조 교관을 외국인으로 충원할 때에는 가르치기만 한다.

제12조 지방의 사정에 따라 의학교를 지방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3년 3월 24일 奉勅

이 관제에 따라 지식영이 교장에 임명되고 그밖에 景台協, 南舜熙 등이 교관에, 劉泓이 서기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지식영을 포함하여 이들은 모두 서양의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식영은 우두법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자신의 말처럼 의학에 특별한 취미가 있어 동양과 서양의 의학을 모두 조금씩 공부했다고는 하나¹⁸⁾ 서양의학을 가르칠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의학교의 교

13) 『관보』, 1896년 1월 20일.

14) 기창덕, 앞의 책, 128쪽.

15) 기창덕, 「송춘 지식영과 의학교」, 『송춘 지식영』, 78쪽, 1994.

16) 지식영, 「上學部大臣書」(장서각 문서번호 2-2005), 『송춘 지식영』, 175쪽.

17) 『皇城新聞』, 1899년 1월 18일.

18) 지식영, 「학부대신에게 올리는 글」, 175쪽, 앞의 책.

관은 부득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부에서는 일본 공사의 추천에 의해 다년간 일본 공사관의 의사로 근무했고 중두의양성소를 운영한 후루시로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빙계약서¹⁹⁾를 작성하였다.

제1관 교사의 고빙 연한은 계약을 맺는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만약 연한이 찬 후에 또 계속 고빙할 경우에는 학부에서 해당 교사에 대하여 미리 의논하여 다시 계약한다.

제2관 교사의 薪金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매월 본국에서 쓰는 은전 130원씩을 주고

제3관 교사의 거주를 마련해 줄 것이나 혹 주거를 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월 20원씩을 지불한다.

제4관 학교과목과 교과는 학부국장교 교장의 지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5관 교사가 본분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학부에서 외부에 말하여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해고하고 그날까지만 월급을 지급한다.

제6관 계약 연한 만료 후에 연장하지 않을 때에는 학부에서 그 교사에게 두달 월급을 별도로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용에 보태게 한다.

제7관 교사가 혹 병이 있어 휴가를 청하였을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휴가를 주되 두달을 넘지 못하며, 薪水는 주되 두달이 넘으면 신수는 절반만 주고 또 두달이 넘으면 연한 만료의 예에 따라 해고한다.

제8관 교사가 부득이한 사고로 잠깐 귀국할 경우 두달 휴가를 주고 만일 휴가기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해고한다.

제9관 계약 속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학부와 외부에서 일본공사와 상의하여 추가로 기입한다.

제10관 계약서는 4부를 꾸며 학부, 외부, 일본공사, 교사가 서명하여 각기 보존한다.

그러나 후루시로가 의학교 교사로 임명된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외과의술에는 뛰어날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이 다르므로 약을 써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의 임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²⁰⁾ 그가 정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사람도 있었다.²¹⁾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중추원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가 1899년 학부 참서관 李圭桓이 중추원에서 외국인 의사 고빙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원래의 계약 기간 3년을 1년으로 고쳐 그의 임용이 가결되어²²⁾ 그와 의학교 교사 고빙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 계약서는 고용된 외국인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중원 의사들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 정부는 제중원 의사들과는 이러한 고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었다. 그것은 제중원의 이중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 정부가 의학교의 외국인 교사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여러 면에서 대비가 된다.

후루시로와 고빙계약을 체결하여 의학교 교사를 확보한 조선정부는 7월 5일 ‘의학교 규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여 속성으로 의사를 길러내되 의술이 발달한 연후에는 그 연한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라에서 의학생들에게 지필목과 교과서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교수과목은 동물, 식물, 화학, 물리, 해부, 생리, 약물, 진단, 내과, 외과, 안과, 부

19) 『독립신문』, 「교사고빙」, 1899년 5월 3일.

20) 『皇城新聞』, 「醫校說明」, 1899년 5월 5일.

21) 『독립신문』, 「의학교사연빙」, 1899년 5월 11일.

22) 기창덕, 앞의 책, 129쪽.

영(婦嬰), 위생, 법의, 중두, 체조 등의 16과목이었다. 수업시간은 체조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5시간이었다.²³⁾ 이처럼 의학교의 규칙이 정해지자 신입생 모집 광고를 1899년 7월 13일자 관보에 신고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8월 16일 입학시험을 보아 50명을 선발하였다.²⁴⁾ 그리고 의학교의 개학을 9월 1일에 한다는 공고와 함께 이보다 3일 전인 8월 29일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기사가 『皇城新聞』에 났고²⁵⁾ 이 개학 일자를 맞추기 위해 일본으로 갔던 후루시로는 8월 26일에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실제로 개학한 날은 9월 4일이며 정식 입학식은 이보다 한 달 뒤인 1899년 10월 2일 오전 11시에 있었다.²⁶⁾

2) 의학교의 운영상황

어렵게 시작은 했으나 의학교의 운영상황은 처음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먼저 인력이 크게 부족했다. 처음에 학생교육은 남순희 교관 혼자 맡아하다시피 했는데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통역을 하고 교재를 번역하는 등 거의 모든 일을 해야 했다. 더구나 교재와 학습용 물품 등이 개학을 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도착하였으므로²⁷⁾ 처음부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수업은 화학 과목부터 시작했는데²⁸⁾ 이는 다른 과목의 교재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재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 편집국에서는 일본인 오가와(麻川松次郎)를 고용하여 의학책을 번역시켰다.²⁹⁾ 이처럼 교재가 조금씩 갖추어지고 강의가 진행되면서 의학교의 교육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0년에는 서양의학을 공부한 한국인 의사 김익남을 교관으로 맞을 수 있었다. 학부에서는 1895년에 김익남을 일본으로 유학보내 의학을 공부하게 하였는데 그는 1899년에 동경자혜의원 의학교를 졸업하였다.³⁰⁾ 그런데 김익남이 부임할 무렵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후루시로를 면직시킨 사건이 일어난다.

후루시로는 수업시간 중에 해부학을 가르치면서 좌측 경골과 우측 경골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과서를 고쳐 적기까지 하였으며, 두개골의 요철을 분간하지 못했다. 이에 학생들이 골학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교사가 잘못 가르쳐도 학생이 이해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지만, 筋學이나 內臟學과 같은 것을 이처럼 잘못 배우게 되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는 커녕 도리어 상하게 되니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배우며 국고를 낭비하는 것보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집단자퇴를 결의하고 학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³¹⁾ 이에 대해 후루시로는 자신이 수업 시간 중 좌측 뼈를 우측 뼈로 잘못 가르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지만 학생들이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 집단자퇴를 청원하거나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이 사태를 방관한 교장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자신이 해고된다면 학생들도 모두 퇴학을 시키고 교장도 면직시켜야 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³²⁾ 이처럼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조선 정부는 후루시로를 해임하는 것으로 문제를 종결지으려고 했다. 그

23) 『관보』, 1899년 7월 7일.

24) 『皇城新聞』, 1899년 8월 17일.

25) 『皇城新聞』, 1899년 8월 26일.

26) 『독립신문』, 1899년 10월 3일.

27) 『皇城新聞』, 1899년 9월 29일.

28) 『皇城新聞』, 10월 16일.

29) 『독립신문』, 1899년 10월 14일.

30) 기창덕, 앞의 책, 338쪽.

31) 『皇城新聞』, 1900년 4월 17일.

32) 『데국신문』, 1900년 4월 27일.

런데 후루시로는 계약 기간이 5월이면 다 차므로 이를 기다려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5월 22일 계약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교관직에서 해임되자 후루시로는 아내의 병을 핑계로 일본으로 돌아갔다.³³⁾ 이에 교장 지석영은 그동안 등교를 거부하던 학생들에게 5월 25일에 학교로 모이라는 공고를 내고³⁴⁾ 28일부터 수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의학을 가르칠 교사가 없었으므로 후임 교사가 올 때까지 산술만을 공부하였다.³⁵⁾

후루시로는 후임으로는 일본 공사관에서 추천한 1등 군의출신인 고다께(小竹武次)가 임명되었다.³⁶⁾ 그의 계약조건은 후루시로와 비슷했으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월급도 150원으로 하는 등 후루시로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고다께는 1등 군의출신이라는 경력에 비쳐볼 때 월급 150원은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정부가 당해년에는 어려우므로 1901년부터 월급을 200원씩 주겠다고 하여 여기에 합의하였다. 고다께는 1902년에 계약을 갱신했고, 이 계약이 끝나는 1904년에는 월급 270원, 계약기간 3년으로 재계약을 맺었다.³⁷⁾

학생들의 집단 자퇴 파동 이후 교육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00년부터는 지원자가 급감하는 또다른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재정상태도 나빠져 원래 학생들에게 약속했던 지필묵과 식비의 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제반 경비가 몹시 궁색해져 거의 폐학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³⁸⁾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02년에 들어서 많이 좋아졌고, 그동안 운영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인사 문제도 안정되었다. 이제 3년 과정의 의학교는 졸업생의 배출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의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문제점은 의학을 실습에 의하지 않고 책을 통해서만 배웠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종의 어의였던 분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저의 의료사업이 확장되었다는 소식 외에도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의학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학교에서는 일본어나 한국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심합니다. 그러나 학문이야 뻥한 일입니다. 게다가 민중의 신앙상 해부를 금지하고 있으니 의학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해부학의 기초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³⁹⁾

의학교의 학생들은 해부와 같은 실습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상실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에비슨도 의학교의 교육 과정이 “오직 일본어로 된 의서강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병원의 환자들이나 연구실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졸업생은 질병이나 치료법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⁴⁰⁾ 그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양식 병원이 없는 당시로서는 당연한 결과였다.⁴¹⁾ 그래서 교장인 지석영은 의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부속병원의 건립을 정부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내었다.⁴²⁾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에

33) 『皇城新聞』, 1900년 5월 22일.

34) 『皇城新聞』, 1900년 5월 22일.

35) 『데국신문』, 1990년 5월 29일.

36) 『皇城新聞』, 1900년 5월 29일.

37) 『皇城新聞』, 1904년 5월 27일.

38) 『皇城新聞』, 1900년 11월 5일.

39) 김옥경·김종대 역, 『고종의 시의 분쉬 박사』, 형설출판사, 1982, 55쪽.

40) 에비슨 저(에비슨 기념사업회 역), 『구한말비록』 상권, 73쪽, 대구대출판부, 1986.

41) 이러한 모습은 요즘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과대학만 만들어 놓고 교육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임상실습에 차질을 빚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선교병원에서는 병원을 먼저 세우고 난 후 의학교를 만들어 학생을 가르치는 순서를 밟았으나 조선 정부에서 세운 의학교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과를 밟았다.

42) 『皇城新聞』, 1902년 1월 18일.

이미 내부 소속의 광제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영이 별도로 의학교 부속병원의 건립을 요청한 점인데 그 이유는 광제원의 성격과 진료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혜민서와 활인서가 혁파된 후 조선정부에서는 제중원을 세워 대민구료사업을 부활시키려하였다.⁴³⁾ 그런데 제중원은 이전의 혜민서나 활인서와는 달리 서양의사가 서양의술을 시술하는 기관이었다. 제중원은 설립 초기에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치며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 조선정부는 1894년 제중원의 운영권을 미 북장로교 선교부로 넘겨주었다. 따라서 1894년 이후 조선에는 한동안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민구료기관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민구료기관을 다시 설치할 필요를 느낀 조선정부는 1899년 내부소관의 병원을 만들고⁴⁴⁾ 다음해인 1900년에 그 이름을 광제원으로 바꾸었다.⁴⁵⁾ 조선정부의 입장에서 외국의사의 힘을 빌려 운영한 제중원은 실패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새로 설치한 광제원을 외국의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운영하려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서양의학을 공부한 조선인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광제원의 의료진은 모두 한의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⁴⁶⁾ 따라서 광제원의 모든 진료는 이전의 혜민서와 활인서의 시절과 같이 한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만 필요에 따라 환자들에게 양약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광제원에서 서양의술이 시술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들어가는 1905년 이후 일본인 의사들이 광제원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므로 의학교의 1회 졸업생들이 배출될 무렵인 1902년 경의 광제원에는 한의사들만이 일하고 있었고, 치료도 필요에 따라 양약과 한약을 나누어 주고 침을 놓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당시의 광제원은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학생들이 실습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다. 따라서 의학생들이 광제원에서 실습을 했다는 주장은⁴⁷⁾ 잘못된 것이다. 일본인 의사들이 광제원에 배치되기 시작한 1905년 이후에는 그것이 가능했겠지만 그 이전에는 광제원의 인력구성이나 성격상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학생들의 교육병원이 될 수 없었다.

의학교의 첫 졸업생들은 1902년 5월 14일부터 졸업 시험을 치렀고 시험 결과는 이로부터 두 달이 경과한 7월 12일에 발표되었다.⁴⁸⁾ 그러나 이들이 실습할 부속병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병원이 완성될 때까지 졸업할 수가 없었다. 부속병원건립 공사는 1902년 6월 경에 시작되어 같은 해 8월 중순 경에 완료되어 이때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⁴⁹⁾ 병원 의사로는 의학교 교사인 고다께 한사람만이 임명되었다. 그는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6개월에 거주비 50원을 받으며, 학부대신과 의학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행하기로 하였다.⁵⁰⁾ 졸업시험에 통과한 의학생들은 약 4개월의 실습을 거친 다음 1903년 1월 9일에 졸업식을 거행하였다.⁵¹⁾ 1회 졸업생은 19명으로 처음 입학생 5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다. 2회 졸업생의 명단은 1903

43) 『高宗純宗實錄』(上), 1885년 2월 29일.

44) 『관보』, 1899년 4월 24일.

『皇城新聞』, 1899년 5월 29일.

45) 『관보』, 1900년 6월 30일.

46) 『관보』, 1900년 4월 28일; 1900년 6월 30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사』, 10쪽,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47) 배규숙, 앞의 논문, 39쪽.

48) 『관보』, 1902년 7월 12일.

49) 『관보』, 1902년 8월 5일.

50) 『皇城新聞』, 1902년 2월 18일.

51) 『皇城新聞』, 1903년 1월 10일.

년 7월 7일에 확정되었으나⁵²⁾ 실제로 졸업식은 이보다 1년 뒤인 1904년 7월 2일 각 대신과 일본 공사가 참석하여 격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⁵³⁾ 2회 졸업생은 1회 졸업생보다 7명이 적은 12명이었다. 그런데 2회 졸업생을 배출한 다음부터는 의학교의 학사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해에 마땅히 배출되어야 할 3회 졸업생이 배출되지 못하고 졸업이 원래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원래 3회 졸업식은 190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07년 1월 29일에 졸업증서 수여식이 이루어졌다.⁵⁴⁾ 이때의 졸업생은 4명에 불과했다. 당시 의학교의 교육이 부실했다는 것은 제3회 졸업생 4명 중 2명인 홍석후와 홍중은이 세브란스 병원 부속의학교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 에비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시기에 조선왕립병원인 제중원이 일군의 조선 젊은이들에게 실용의학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소위 국립의료원의 첫 졸업식이 거행되었을 때 졸업생 중 두사람이 그들이 진료나 질병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장기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우리 병원의 보조원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이미 의서를 읽었기 때문에 더 빨리 진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⁵⁵⁾

이처럼 대한제국에서 세운 의학교의 졸업생이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의학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할 정도⁵⁶⁾로 의학교의 운영이 부실해진 것은 일본의 침략으로 국운이 급속히 기울어진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05년 우리나라의 주권이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고 통감부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때 우리나라에 경무국 고문관으로 온 일본국 경시청 경시인 마루야마(丸山重俊)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의학교의 존폐여부가 논의되다가 이것은 1906년 8월에 대한의원 설립계획으로 귀착되었다. 그러자 의학교에 재학중이던 많은 학생들이 자퇴하여 학교를 떠나고 의학교의 운영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⁵⁷⁾ 이처럼 의학교의 앞날이 불확실해지자 몰래 세무주사 선발 시험에 응시해 진로를 바꾸고자 한 의학생들이 생겨나기도 했으며,⁵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학교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아 학교의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다.⁵⁹⁾ 그리고 일제에 의해 대한의원이 설립되면서 “대한제국의 자부심의 하

52) 『관보』, 1903년 7월 15일.

53) 『皇城新聞』, 1904년 7월 2일.

54) 『皇城新聞』, 1907년 1월 26일. 이들은 졸업장을 받았으나 면허장은 받지 못했다. 나라에서 발급한 최초의 면허장은 세브란스 1회 졸업생 7명에게 주어졌다.

55) 에비슨(에비슨 기념사업회 역), 『구한말비록』 상권, 73쪽, 대구대 출판부, 1986.

56) 정구충의 『한국의학의 개척자』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의로 근무하는 홍석후에게 언더우드와 에비슨이 간청하여 제중원에 나가 일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미국의 의사들에게 배우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정구충, 『한국의학의 개척자』, 223쪽, 동방도서, 1985). 그러나 당시 의학교 부속 병원이 유명무실해지고 광제원은 기존의 한의들과 일본인 의사들의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것에 비해 세브란스 씨의 기부금으로 지은 세브란스 병원은 여러 명의 선교의사들이 진료를 하던 최신식 병원이었다. 따라서 홍석후와 홍중은이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들어와 임상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에비슨의 회고록은 이들을 직접 가르친 스승의 증언인데 반해 『한국의학의 개척자』는 개인의 회고나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57) 기창덕, 앞의 책, 132쪽.

58) 『皇城新聞』, 1906년 11월 7일.

59) 『皇城新聞』, 1907년 3월 18일.

나로 존재했던 의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나돌았던 소문들처럼 폐지되었다. 즉 1899년 3월 24일 「의학교관계」의 반포로 시작한 학부 소속의 의학교는 1907년 3월 14일로 8년간의 운명을 다한 것이다.”⁶⁰⁾

의학교 졸업생은 총 36명으로 이들은 졸업후 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들은 의학교의 교관으로, 군의로, 또 광제원의 의사로 활동했다. 특히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군의로 활동했다.⁶¹⁾ 그런데 광제원에서 근무할 의학교 졸업생을 뽑기 위해 시험을 치른 것은 1907년 3월1일에서 3일까지의 일인데, 대한의원 관계가 3월 13일에 반포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대한의원에서 일할 의사를 뽑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대한의원에서의 의학교육

대한의원의 설립은 통감 이또오 히로부미의 구상으로⁶²⁾ 그는 대한제국에 의해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던 광제원, 의학교, 적십자병원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식민지적 의료 체계에 적합한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⁶³⁾ 그는 1906년 7월 일본 육군 군의총감 사또(佐藤 進)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학교 교관 고다께(小竹武次), 대한적십자병원 주임 요시모토(吉本潤亮) 등 일본인만으로 구성된 ‘大韓醫院創立委員會’를 조직하고 여기서 대한의원의 설립을 결정하게 하였다.⁶⁴⁾ 즉 대한의원은 이미 실질적인 주권을 상실한 우리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제에 의해 강제로 그 건립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은 “명칭은 대한의원이지만 통감부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기구로 외관으로는 한국민을 위한 발전된 최신식 의료시설로 선전되어 전시효과에는 큰 몫을 하였으나, 실은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 관리 및 그 가족, 그리고 일본인 거류민의 보건을 위한 의료시설에 지나지 않았다.”⁶⁵⁾ 때문에 이러한 대한의원의 설립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의 언론은 지극히 비판적이었다.⁶⁶⁾

1907년 3월 13일 칙령 제9호로 대한의원 관계가 반포되고 이에 따라 의학교육의 기능을 대한의원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관계가 반포된 후 상당기간은 내용적인 면에서 의학교 시절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었다. 의학교 건물도 11월 21일까지는 그대로 사용하였다.⁶⁷⁾ 그러나 의학교의 교장이었던 지석영이 교관의 지위로 강등되었고, 교관이었던 고다께가 의학교육의 실무를 책임지는 교육부장으로 승진되며, 외국인 교사로 스크랜튼이 고용되는 등 인사상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난 모든 변화는 대한의원에서 일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의원의 초대 원장은 을사오적의 하나로 규탄받는 내부대신 李址鎔이었다. 3월 19일에 원장으로 서임된 李址鎔은 약 2개월 동안만 원장으로 있었고,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면서 5월 22일에 제2대 원장으로 내부대신 任善準이 임명되었다.⁶⁸⁾ 그러나 任善準도 그해 말까지 약 6개월 동안만 원장으로 있었고, 이듬해인 1908년 1월 1일부터는 대한의원의 설립을 주

60) 신동원, 앞의 책, 281쪽.

61) 의학교 졸업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배규숙의 논문 53-68쪽을 참조할 것.

62) 『朝鮮總督府醫院20年史』, 1쪽, 朝鮮總督府醫院, 1928.

63) 신동원, 앞의 책, 282-288쪽.

6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醫院20年史』, 5쪽, 1928.

65)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56쪽, 아카데미아, 1995.

66)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18일.

67) 『皇城新聞』, 11월 23일.

68) 『관보』, 1907년 5월 30일.

도했던 사또(佐藤進)가 제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사또의 원장 취임은 1907년 12월 27일에 칙령 제73호로 관제를 개정하면서 의육부라 개칭하고 전직원이 일본인으로 교체되는 변화와 함께 일어난 일이었다. 이후 1909년 2월 4일에는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하였다. 이때 한인 교수로는 유세환과 최규익만이 남게 되고 강의도 일본어로 진행되어 대한의원은 한일합방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의 식민지 의학 교육기관이 되어 있었다. 의학교, 광제원, 적십자 병원을 세워 자주적인 의료체계의 확립을 기도했던 대한제국의 노력은 1905년 일본이 국권을 침탈하면서 좌절되고, 이들 기관들이 대한의원이 라는 식민지 의료기관으로 전환됨으로써 단절되었던 것이다.⁶⁹⁾

69) 주진오,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중원-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3): 29, 1997.